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유영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252 발의연월일: 2024. 11. 5.

발 의 자:유영하·이헌승·김기웅

권영세 • 우재준 • 강선영

이인선 • 박성훈 • 임종득

김정재 · 박덕흠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등의 위반을 이유로 피해를 입은 자는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자신의 피해를 전보(塡補)받을 수 있 으나, 증거의 편재 등으로 인해 손해 및 손해액 입증을 위한 자료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임.

이에 관련 피해를 보다 적극 구제받을 수 있도록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에 각각 당사자 자료제출명령제도를 확대 도입하고,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의무를 강화하며, 법원이 영업비밀관련하여 비밀유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하여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(안 제110조, 제111조, 제112조 및 제119조).

법률 제 호
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10조의 제목 "(기록의 송부 등)"을 "(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 제출)"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중 "필요한"을 "그 소송당사자가 제111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노력을 통하여 해당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취득할 수 없음을 소명한"으로, "해당사건의 기록(사건관계인, 참고인 또는 감정인에 대한 심문조서, 속기록 및 그 밖에 재판상 증거가 되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)"을 "그 자료"로하고,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1. 제44조제4항에 따른 자진신고 등과 관련된 자료
- 2. 조사·심리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작성한 자료(해당 사건의 의결서에 명시된 자료는 제외한다)
- 3.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공개 자료
- 4. 영업비밀 자료

- ③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하지 아니하는 자료가 제2항 단서 각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.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된다.
- ④ 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료가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법원은 제출요구의 목적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한다.

제111조제1항 본문 중 "제40조제1항, 제45조제1항(제9호는 제외한다) 또는 제5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"을 "제109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"으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"거 절"을 "거부"로 한다.

제1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그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"을 "그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(제110조제2항제4호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원에 영업비밀 자료를 제출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를 포함한다)이 보유한 영업비밀"로, "소명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"를 "소명하여 신청한 경우에는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"제111조제1항"을 "제110조·제111조"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"당사자"를 "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당사자는"을 "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"으로 한다.

제119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제110조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의 자료의 제출 및 비밀유지 명령 등에 관한 적용례) 제110조부터 제112조까지의 개정규정 및 제11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행 혅

제110조(기록의 송부 등) 법원은 제109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의 소가 제기되었을 때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해당 사건의 기록(사건관계인, 자가 제111조에 따른 자료의 참고인 또는 감정인에 대한 심 문조서, 속기록 및 그 밖에 재 판상 증거가 되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)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.

<신 설>

개 정 안

제110조(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

제출) ① -----

----- 소송당사 제출 등 합리적인 노력을 통하 여 해당 손해의 증명 또는 손 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취득할 수 없음을 소명한----

-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.
- 1. 제44조제4항에 따른 자진신 고 등과 관련된 자료
- 2. 조사 · 심리를 수행하기 위하 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작성한 자료(해당 사건의 의결서에 명시된 자료는 제외한다)

<신 설>

<신 설>

제111조(자료의 제출) ① 법원은 제40조제1항, 제45조제1항(제9 호는 제외한다) 또는 제51조제 1항제1호를 위반한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 당사

- 3.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공개 자 료
- 4. 영업비밀 자료
- ③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하지 아니하는 자료가 제2 항 단서 각호에 해당하는지 여 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.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④ 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료가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법원은 제출요구의 목적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열람할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.

제111조(자료의 제출) ① ------제109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----- 자에게 해당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 (제44조제4항에 따른 자진신고 등과 관련된 자료는 제외한다) 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. 다만, 그 자료의 소지자가 자료의 제 출을 <u>거절</u>할 정당한 이유가 있 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~ ⑤ (생 략)

제112조(비밀유지명령) ① 법원은 제109조에 따라 제기된 손해배 상청구소송에서 그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에 대하여 다 음 각 호의 사유를 모두 소명 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의 신청 에 따라 결정으로 다른 당사자 (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),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 을 대리하는 자, 그 밖에 그 소 송으로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 에게 그 영업비밀을 그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영업비밀에 관 계된 이 항에 따른 명령을 받 은 자 외의 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다. 다

<u>거부</u>
·.
② ~ ⑤ (현행과 같음)
제112조(비밀유지명령) ①
그 당사자 또
는 이해관계인(제110조제2항제
4호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
법원에 영업비밀 자료를 제출
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를 포
함한다)이 보유한 영업비밀
소명하여 신청한 경우에
<u> </u>

만, 그 신청 시점까지 다른 당사자(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), 당사자를 위하여소송을 대리하는 자, 그 밖에그 소송으로 영업비밀을 알게된 자가 제1호에 따른 준비서면의 열람이나 증거조사 외의방법으로 그 영업비밀을 이미취득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1. 이미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 야 할 준비서면, 이미 조사하였거나 조사하여야 할 증거 또는 <u>제111조제1항</u>에 따라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자료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
- 2. 제1호의 영업비밀이 해당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공개되면 당사자의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비

·.
1
<u>제110조·제111조</u>
2
<u>당사자 또는</u>
<u>이해관계인</u>
<u> </u>

밀의 사용 또는 공개를 제한 할 필요가 있다는 것

- ② <u>당사자는</u> 제1항에 따른 명령(이하 "비밀유지명령"이라 한다)을 신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.
- 1. ~ 3. (생략)
- ③ ~ ⑤ (생 략)
- 제119조(비밀엄수의 의무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사 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비밀 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를 이용해서 는 아니 된다. <단서 신설>

1. ~ 4. (생략)

②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-
 1. ~ 3. (현행과 같음)
③ ~ ⑤ (현행과 같음)
제119조(비밀엄수의 의무)
<u>다만, 제110</u>
조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는 경
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1. ~ 4. (현행과 같음)